

2024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연장공고

우수 중소·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“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*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4-689호의 연장 공고로서, 최초 공고일(24.9.19) 이후 접수한 모든 신청제품을 통합하여 평가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22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 제도개요

□ 목적

-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·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

□ 주요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*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(단독)R&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혁신제품”으로 지정

*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(R&D) 사업

- “혁신제품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 구매면책, 시범구매,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

추진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사목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
- 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
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“혁신제품 지정지침” 제2023-139호

2

신청자격

□ (신청자격)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- ① (중소·중견) 국가연구개발사업(산업부)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(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)
- ② (중소) 에너지협의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&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&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(특허, 실용실안)*

※ 2024년 하반기부터 기술마켓 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'2024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'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기술마켓 미인증제품도 신청 가능(단, 혁신제품 지정 후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필수)

- ③ (중소·중견)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

□ (우대사항) 아래와 같은 경우,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

-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,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
-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*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([별지4] 혁신제품 추천서 제출)

*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3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[공고·접수] '24. 10. 22.(화) ~ '24. 10. 28.(월), 18:00까지

□ [신청방법] 제품등록* 후, 신청 서류 구비하여 신청(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)
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신청자격	기관명	연락처	신청방법
① 산업부 R&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	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	02-6009-3609	inno@kiator.kr 이메일 제출
② 에너지기술마켓 (에너지 공공 R&D, 자체 R&D)	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	061-345-7733 061-345-7735	www.techmarket.kr 인증공모 - 혁신제품 지정 공모

※ (공통 안내사항)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(세부품명번호 동일)으로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, 기 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 제품 간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·성능 비교표 필수 제출

□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(파일명 : 신청기업명) 제출

No	항목	구분	관련	예시/참고사항
①	혁신제품 지정 신청서	필수	서식1	- 한글/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-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/식별번호 발급 필수
②	혁신제품 설명서	필수	서식2	-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공문(보통/완료 이상),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정서 등 별도 첨부(해당시)
③	약정서	해당시	서식3	- 특허 공동 등록시
④	기술·성능 비교표	해당시	서식4	- 기 지정된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 제품(세부품명번호 동일)으로 신규 지정 신청하는 경우
⑤	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	필수	서식7	- 한글파일로 제출
⑥	자기점검표	필수	별지1	- 한글/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
⑦	제품 규격서	필수	별지2	
⑧	혁신제품 추천서	해당시	별지3	
⑨	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	해당시	-	- 신청자격② 신청 기업 제출
⑩	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-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(별지3) 및 해당 증빙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별지4	- 인증·허가의 획득, 신고 ▶ 기술인증 예시 : NEP 등 ▶ 품질인증 예시 : KS인증, K마크, 환경표지인증 등 - 검사의 통과 자료 등 - OEM**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
⑪	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-	- 특허등록증(제출 시, 특허원부까지 제출 必) -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- 공공/민간 수요 조사서 등(해당시)
⑫	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-	-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▶ 계산서, MOU, 구매계약서 등 - 직접제조의 경우,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▶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내역서, 작업공정도,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

*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** 제조 형태 관련 :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경우 '직접생산'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4

지정절차

□ 지정절차

구분	주체	세부내용	일정
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	신청기업	■ 신청 제품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하고 식별번호 발급 *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■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또는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접수(유형별 접수처 상이)	~10.28
↓			
②서류검토	평가기관	■ 자격요건 부합여부, 서류 적정성 등 검토	10월
↓			
③공공성 평가	평가기관	■ 공공성 평가(적부 판정)	11월
↓			
③혁신성 평가 (필요시 현장조사)	평가기관	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■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	11월
↓			
⑤조달적합성 검토	조달청	■ 제품 규격·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	11월
↓			
⑥심의예정공고	산업통상자원부	■ 산업부 홈페이지에 심의 예정 공고(20일)	11월
↓			
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(공공수요발굴위원회)	기획재정부	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·의결	12월
↓			
최종지정 및 등록	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	■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(온라인) ■ 혁신장터 등록	12월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- ② (공공성 평가위원회)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, 필요성 등을 평가

<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>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 기준
공공 적합성	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	▪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,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·제품인지 여부
	공공구매의 필요성	▪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
	수요기관 구매 적합성	▪ 해당제품·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
개발 완성 수준	TRL	▪ 기술완성수준 판단, 평가기관 검증 여부
	안전성	▪ 현장 적용시 안전,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
	규제	▪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

* 개별 항목에 위원 2/3 이상이 '적합' 의견을 제출, 전체 항목이 '적합'인 경우 **최종 적합** 판정

- ③ (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)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*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

* 평가방법은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

- 「혁신제품 지정지침」 제12조에 의거, 평가위원회의 **종합평가점수* 75점 이상**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

*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

<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>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 기준
혁신 적합성 (50점)	제품의 신규성(20점)	▪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
	제품의 탁월성(20점)	▪ 기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 내는 혁신기술 여부 확인
	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(10점)	▪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·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,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
시장성 (50점)	시장규모(25점)	▪ 해당 제품·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
	파급성(25점)	▪ 관련 기술·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

- ④ (현장조사)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

*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

- ⑤ (심의예정공고)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→ 이의신청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

- ⑥ (지정 최종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,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

*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

- ⑦ (지정 및 인증서 발급)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,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

5

문의처

기관명	연락처	비고
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	044-203-4546	제도 문의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	02-6009-3609	운영 절차,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- 산업부 R&D, 차세대세계일류상품
	inno@kiat.or.kr	
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	061-345-7733	운영 절차,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-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&D 또는 자체 R&D 제품 * 지식재산권 필수
	061-345-7735 yang1122@kepcoco.kr jjv0913@kepcoco.kr	